

의안번호	2209460
의 퇴 인	김윤의원
회 답 일	2025.04.16.
추계번호	25C1994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의2 (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 대응)	-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과약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2항) -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8조의2 (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 대응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·시행할 것을 명시함
- 개정안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은 ①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

상황, 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, ③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및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급 부족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, ④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을 말함

- 현행법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“기후보건영향평가” 시행(동법 제37조의2 제1항)의 근거만이 마련되어 있으므로, 개정안은 영향평가 외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
- 현재 질병관리청은 “기후위기대비 기후보건 인프라구축” 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, 동 조문의 신설로 인해 기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 -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, ‘기후 탄력적 보건시스템 구축’(신규 편성, 1억 5,000만원), ‘기후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’(2억 1,500만원) 등의 사업 계획 중
- 다만,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